##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80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김종양·신성범·김미애

윤영석 • 고동진 • 김성원

이종배 • 백종헌 • 주진우

강선영 · 김위상 · 강대식

박정하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 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 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의2 신설).
-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 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3항 중 "제39조제1항·제4항"을 "제39조제1항·제4항·제6항(적재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제39조제1항·제6항의 경우에는 차의 적재중량을 검사·측정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9조의2(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
	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도로법」에 따
	른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
	를 제공받아 증빙자료로 활용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
	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 · 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 한다), 제13조제1항 · 제3항 · 제 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 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 21조제1항 · 제3항, 제22조, 제2 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 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 27조제1항 · 제7항, 제29조제4항 •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 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 항 · 제4항, 제48조제1항, 제49 조제1항제10호 · 제11호 · 제11 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 항 · 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 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100 -7 -111
<u>제39조제1</u>
<u>항·제4항·제6항(적재중량에</u>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
과하여 운행한 경우만 해당한
<u>다)</u>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u> </u>
는 차의 적재중량을 검사・측

정한 자료를 포함한다)